

‘성차별’ 취업규칙 처벌

노동부 5백명 이상 대기업 심사...명단도 공개

종업원 5백명 이상 대기업이 취업규칙 내용 가운데 남녀 성차별을 하는 조항을 고치지 않을 경우 명단공개와 함께 사법처리된다.

노동부는 여행원제 폐지와 보험·

증권 등 제2금융권과 30대 그룹 1백여개 계열사에 대해 남녀고용차별 개선 지시를 내린 데 이어 10일 전국 5백명 이상 대기업 1천1백61곳에 이런 지침을 알렸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이들 대기업의 취업규칙을 오는 9월15일까지 심사해 성차별 조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지시를 내리고 해당기업이 내년 7월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사업주를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특히 성차별조항 시정지시를 이유로 기존 남자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하향조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임금·보통체계 조정 때는 반드시 노사합의를 거치도록 행정지도 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별로 해당기업의 인사·노동관련 규정 일체를 넘겨받아 모집·채용·임금·교육·배치·승진·정년·퇴직·해고·육아휴직 등에 대한 조항이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정밀심사하도록 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해 동등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정년·해고에서 성차별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또 그밖의 성차별때엔 2백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성교사 승진차별 해소 절실”

관리직 0.6%뿐...여성 교육위원들 승진규정 개정 건의 93.9.21

“전국 교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교사 가운데 교장·교감 등 관리직에 오른 비율은 1백명에 한명도 안됩니다. 이런 불평등은 하루빨리 고쳐져야 합니다.”

15개 시·도교육위원회 여성교육위원 8명은 최근 오병문 교육부장관을 만나 ‘여교원의 승진기회 확대를 위한 방안’을 건의하면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을 바꿔주도록 요청했다.

이들은 건의서를 통해 “현행 승진규정은 남녀교사 전원을 대상으로 평정·확인을 하도록 하여 여교사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면서 “평정자(교감)·확인자(교

장)가 평정대상자의 직위별·남녀별로 분포비율에 따라 평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각 시도교육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 초·중등 교사 32만1천여명 가운데 43.4%인 13만9천명이 여교사인 데도 관리직 여교원 비율은 4.3%에 불과했다.

또 남자교원은 관리직이 11.7%, 주임교사가 32.6%인 데 비해 여교원의 경우는 관리직이 0.6%, 주임교사는 7.6%에 그쳐 상대적으로 중견여교사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교육위의 박인숙 위원은 “여교원이 최근 크게 늘고

있으나 경력과 나이면에서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인원은 적은 편”이라면서 “그러나 아직 교육현장에 성차별 요소가 적잖게 남아 있는 만큼 학교와 가정에서 2세 교육에 힘쓰는 여교원에게 참여기회를 보장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의 교육위원 2백24명 가운데 8명인 여성교육위원들은 지난해 8월 전국여성교육위원협의회(회장 윤위분·경북)를 만들어 여교원의 근무의욕과 사기를 높이기 위한 방안제시 등의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광주/안관옥 기자